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및 승인 절차

1. 유럽 및 각국의 특허 관리기관

- ☐ 유럽 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www.european-patent-office.org
 - EPO에서 특허를 받으면 EU의 모든 국가와 사이프러스, 모나코,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EPO 특허는 국내 특허로 바뀌어 해당되는 국내법의 관리를 받게 됨.
- ☐ 유럽 주요국가 특허청
 - 영국 특허청(The UK Patent Office): www.patent.gov.uk
 - 독일 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www.dpma.de
 - 프랑스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www.inpi.fr

2. 관련 법령

- ☐ 유럽 특허 협약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1973)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legal/epc/e/mal.html#CVN>
- ☐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http://www.patent.gov.uk/patent/legal/patact1977.htm>

3. 특허 출원 절차

- ☐ 유럽특허
 -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덜란드 헤이그 지청(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계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이 된다.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된 유럽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서치리포트와 함께 공개된다. 서치 리포트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특허취소는 지정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능하다.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계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므로 유일무이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침해소송 및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 처리된다. 강제성이 없으며 특허출원인은 가입국 국내법에 의한 절차와 유럽특허조약상의 절차중 선택이 가능하다. 3인 기술심사관의 합의체에 의한 공동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치리포트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 인용자료, 용어사전)

☐ 유럽 특허청의 특허 출원방법 안내

-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legal/guiappl/e/index.htm>
- http://db1.european-patent-office.org/www3/dwld/applicant_guide/part_2/pct_guide_e.pdf

☐ 유럽 특허청 출원 구비 서류

-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epo/formul/epc_e.htm

☐ 유럽 특허청의 특허 출원 절차도

-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legal/guiappl/e/ga_ai.htm

☐ 영국 특허청의 특허 출원방법 안내

- <http://www.patent.gov.uk/patent/howtoapply/index.htm>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거의 전세계에 출원을 한 후 상황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나라를 2년 6개월 내에 정할 수 있는 제도. PCT 출원을 하면, PCT조약가입국인 약 120개국에 한번에 출원한 효과가 있고, 2년 6개월 내에 그 중 특허를 받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할 나라를 시장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다만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허를 받을 나라가 5개국 안 된다면, 오히려 비용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되기도 함. PCT출원은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허, 실용신안에만 적용.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 PCT 출원 안내 : <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index.htm>

출처 : www.pharmxpert.net